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3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22.

발 의 자 : 서미화 · 김예지 · 김선민
이정문 · 박정현 · 조승래
최혁진 · 이광희 · 박홍배
이연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와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을 규정하고 있음.

최근 장애인 지원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. 그런데 현행 규정은 이러한 기관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여 신고의무가 명확히 부과되지 않거나, 학대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제공

기관,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,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해당 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제2항).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3제1항제4호 중 “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”를 “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,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,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제21조제3항”을 “제21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9조의4제2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6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27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1조제4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애인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범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제3조(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

8. ~ 13. (생략)

② ~ ⑬ (생략)
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
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.

1. ~ 25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

8. ~ 1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⑬ (현행과 같음)

제59조의4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

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25. (현행과 같음)

26.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 2에 따른 주간활동·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른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
27.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21조제4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

③ ~ ⑧ (생략)	<u>자</u> ③ ~ ⑧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